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6월 2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불공정무역조사팀장 윤종욱, 전성규 사무관(02-2110-5584) 산업피해조사팀장 김남영, 이수경 사무관(02-2110-5564) 덤핑조사팀장 방순자, 김영민 사무관(02-2110-5572)		

제 304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

- 『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정
- 『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』 건 예비판정에 대해 긍정으로 판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: 현정택)는 '12.6.20(수), 제304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○ LG전자(주)와 LG이노텍(주)이 (주)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『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정하였고,

○ (주)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『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』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을 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들인 LG전자(주)와 LG이노텍(주)이 피신청인들인 (주)오스람코리아, (주)바른전자, 다보산전(주)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『LED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건에 대해

○ 조사대상물품(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)이 신청인들의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으므로,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

□ 지난 '11.7.7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LED 조명제품(4종) 및 패키지 제품(11종)에 대해,

○ 신청인들의 7개 특허권들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, 해당 물품의 수입·판매행위 중지 등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

□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조사대상물품의 구성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,

○ 해당 특허권들은 공지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

□ 그 동안 무역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하였으며, 당사자들을 상대로 현지조사,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하였음

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(주)테크팩솔루션이 피신청인 다이와 캔과 유니버설 캔을 상대로 신청한 『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』 건에 대해

○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 지연*(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))된 것으로 판단하여 긍정판정하고,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공급국 정부 등에 통보하기로 하였음

* 생산기간이 짧은(동건은 1년 미만) 신규산업의 경우에 대해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 반덤핑제도를 최초로 적용한 것임

□ 조사대상물품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시장규모는 약 200억원('11년)이며, 이중 국내생산품은 2%, 일본산 물품은 98% 내외를 차지하였음

○ 신청인은 일본산 물품 100%인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'10.7월 신규로 설비를 투자하여 '11.3월부터 생산을 개시하였으나,

- 일본 공급자의 덤핑판매로 인하여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

○ 이에, 무역위원회는 올해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약 5개월에 걸쳐 예비조사를 거쳐 예비판정을 하게 되었음

- 향후 3개월(2개월 연장가능)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임

□ 금번 보틀캔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인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『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』에 대한 제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<붙임1>

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: LG전자(주), LG이노텍(주)
○ 피신청인(오스람제품 수입사): (주)오스람코리아, (주)바른전자, 다보산전(주)
○ 조사대상물품: LED 조명제품 4종 및 패키지제품 11종
○ 혐의내용: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을 국내로 수입·판매

□ 조사 경과

○ '11.7.7. : 조사신청서 접수
○ '11.8.11. : 조사개시 결정
○ '11.8.~'12.4. : 당사자들에 대한 서면조사
○ '11.8.~'12.5.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운영
○ '11.12.~'12.4. : 특허 유·무효 및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 감정
○ '12.1.26. : 기술설명회 개최
○ '12.2.28. : 피신청인 현지조사
○ '12.6.20. : 무역위원회 의결

□ 쟁점 사항

○ 조사대상물품의 구성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특허권들이 공지기술에 의해 무효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※ 오스람측이 신청한 건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판정('12.4.25)

○ 조사대상물품(LG이노텍(주)의 LED 패키지 제품 7종)은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·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(무혐의)

<붙임2>

알루미늄 보틀캔(원심)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개요

□ 조사개요

○ 신청인 :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(국내생산개시: '11.3월)

○ 피신청인 : 일본 Daiwa Can Corp., Universal Can Corp.

○ 조사대상물품 : 알루미늄 보틀캔(Aluminum Bottle Can)

* 알루미늄을 주원료로 하는 병모양의 용기(용적 1리터 미만)로서 국내에서는 "테크팩솔루션"이 주요 생산자임

* HSK 7612.90.9010 - 용적 1리터 미만의 알루미늄 용기

○ 조사경과 : '11.12.19. 조사신청, '12.1.18. 무역위 조사개시 결정

□ 국내시장현황

○ 국내시장 규모('11년 기준) : 206억원(9,650만본)

○ 국내생산자 :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1개 업체

* 롯데알미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국내산업에서 제외

○ 수입자 : 롯데상사, 동서식품, 남양 야쿠르트

○ 수요자 : 롯데칠성, 동서식품, 남양 야쿠르트

□ 반덤핑 조사 및 조치 일정

○ 조사개시 결정 → 예비판정(5개월 이내) → 공청회 → 최종판정(5개월 이내) → 반덤핑관세부과 여부 결정 등 조치(기획재정부)